

【사건번호 2023-006】 법무부 발간물 데이터 사건

1. 개요

- 피신청인: 법무부
- 대상 공공데이터: 발간물 데이터
- 신청목적: 출판, 전자책 제작

2. 신청취지

- 피신청인은 신청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며, 영리적 이용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.

3. 사실조사

가. 데이터 보유·관리 현황

- 신청 데이터는 법무부가 2022년 12월 발간한 “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”으로, 총 5편(법률의 제명과 구성, 법률의 주요내용, 조문별 해설, 해석사례, 부록(법령집))으로 구성됨
 - 신청 데이터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공공누리 제4유형* 조건에 따라 이용가능하다는 이용허락의 취지가 표시되어 있음
 - * 출처표시 조건으로 무료로 이용가능하나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
- 피신청인은 동일한 제목의 자료(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)를 2015년 및 2018년에도 발간한 바 있으며, 2015년판은 공공누리 제1유형*, 2018년판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제공하고 있음
 - * 출처표시 조건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, 이용형태에 제한이 없음

나.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

- “공공데이터”는 “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”(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)를 의미함
 -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소관 법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해설 및 유권해석 등 해당 법률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를 국민에게

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,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*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음

* pdf 등 전자화된 파일로 관리·제공하고 있음

다.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

-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.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,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함(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)
 - 또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음(공공데이터법 제3조제4항)
 -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비공개성은 문제되지 않으며,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공대상으로 볼 수 있음

-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, 이 사건 데이터는 법무부가 발간한 2018년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,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개정을 기획하고, 외부 기관과 해설집 작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,
 - 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해설집과 관련된 지적재산권(편집·디자인)은 법무부와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며, 신청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
 -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, 이 사건 데이터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, 해당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- 한편, 2015년판에 관한 이용조건(공공누리 제1유형)과 2022년판에 관한 이용조건(공공누리 제4유형)이 다르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기되었으나, 대상 데이터에 따라 제3자의 권리 포함 유무, 이용허락 여부 등 관련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2015년판을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제공했다

고 해서 2022년판까지 상업적 허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

4. 조정내용

가. 조정결정 사항

-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신청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공거부사유가 있음을 확인한다.

나. 조정결정 이유

-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이하 '공공데이터법'이라 한다)」에 따르면,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(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).
 - 다만, 공공데이터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「저작권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(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각 호).
- 이 사건 관련 법령, 당사자 제출자료 및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, 이 사건 데이터에는 저작권법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, 해당 권리자로부터 상업적 이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였으므로,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.

5. 조정결과

- 위와 같은 조정안을 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